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39

발의연월일: 2022. 9. 26.

발 의 자: 김수흥・김주영・최인호

김교흥 • 기동민 • 이명수

김민석 · 안규백 · 강득구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금융·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행과 같음)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 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 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 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 -----2027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 월 31일-----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